

# 민사소송법

## 【문 1】

###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2. 1.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문항에서 추가로 제시되는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은 乙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차용증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자신은 백지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고 누가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과 1억 원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하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금 채권과 투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6,00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억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된 다음, 乙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① 약정금 채권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고, ② 투자금 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甲과 乙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로 乙의 甲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15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와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을 이유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분,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6. 1. 乙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乙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전인 2019. 1. 15. 이미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 丙은 2019. 7.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丙의 추후보완 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4.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5.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丁은 2019. 5. 20. 乙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이 제기한 추심금 지급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5점)

## 【문 2】

###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1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였는데, 乙은 현재 돈이 없으니 일단 노트북을 인도해 주면 일주일 내 노트북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甲은 乙의 말을 믿고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도 乙이 노트북 매매대금을 주지 않자,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노트북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대비하여 인도받은 노트북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도 함께 제기하였다(부대항소는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 계 속 -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甲이 기각된 주위적 청구와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甲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甲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재판의 누락인지, 판단 누락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3점), 甲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7점)를 기재하시오.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오히려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항소일부인용 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